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718
----------	------------

제안연월일 : 2021년 9월 8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 제13조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한 운영세칙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은 이를 삭제하였는바, 그 필요성에 따라 운영세칙을 안 제12조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을 신설함(안 제12조 신설).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용도로 운용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교육비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제2호 중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

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중“(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을”을 “교육감은 기금을”로, “교육감 소속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 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제6조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으로 한다”를 “이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교육시설안전과장
2. 위촉직 위원 : 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개의”를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심의안건”을 “심의 안건”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총괄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는 제11조로 하고 제11조(중전의 제12조) 중 “시행일로부터 5년으”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는 제12조로 하고 제14조는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